

충청북도의회의원징계요구의견

의안
번호 340

제안년월일 : 2000. 10. 6
제안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충청북도의회 구분선의원을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으로 도의회 출석정지 30일
- 충청북도의회 이완영의원을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으로 도의회 출석정지 15일
- 충청북도의회 이길하의원을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으로 도의회 출석정지 10일
- 충청북도의회 최영락의원을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제안이유

- 2000. 7. 6일 실시된 제6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수수사건과 연루된 의원으로서 도의원 신분상의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하고, 도민 모두에게 공신력과 도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므로
-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 재발을 방지하고 도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4. 첨부

-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관계법령 1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I. 상황개요

구 분	일 자	비 고
○ 지방의회 금품선거의혹 보도	2000. 7. 5	○ 일부지방지 보도
○ 전체의원 간담회	7. 5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촉구
○ 6대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	7. 6	
○ 의장선거관련 기자회견	7. 8 7. 10	○ 심홍섭의원 ○ 최영락, 이길하의원
○ 관련의원 구속 입건	7.11~7.12	○ 구속: 박재수,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구본선의원 ○ 불구속입건 : 이완영의원
○ 도의회 활성화를 위한 자정결의 및 윤리특위 구성	7. 28	○ 제1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채택의결 ○ 윤리특위구성 결의 - 의원 5명 - 활동기간 : 2002년 6월말까지
○ 의원직사퇴서 제출	9.2~9.20	○ 정태정의원 사퇴(9. 2) ○ 김주백의원 사퇴(9. 15) ○ 김형태의원 사퇴(9. 20)
○ 청주지방법원형사합의부 1심 선고 공판	9. 25	○ 선고결과: 실형 1명 집행유예 5명 ※ 1심 선고공판 불복 항소중

헌법제27조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II. 윤리특위 활동 결과

일 자	내 용 요 지
2000. 8. 1 (간담회)	○ 윤리특위 운영방향 의견교환
8. 4 (회의)	○ 비공개회의 의결 ○ 의장에게 윤리특위운영을 위한 정상안건 부여요구
8. 11	○ 의장선거관련 금품수수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촉구 공문접수(의장→윤리특위)
8. 14 (회의)	○ 의장선거관련 질문조사 실시와 진술청취 합의
8. 16 (회의)	○ 의장선거와 관련한 질문조사의견 ○ 윤리특위 출석요구 의원 질문답변의 건 ○ 구속의원의 의원직사퇴 권고안 등 의결
8. 26	○ 구속의원 사퇴권고 ※ 윤리특위 위원장 청주교도소 방문
8. 28 (간담회)	○ 전체의원 질문서에 대한 답변검토
8. 31 (회의)	○ 의원 진술 청취(진술의원 4명)
9. 25 (간담회)	○ 1심 선고 공판후의 윤리특위 운영방안 협의 ○ 의원징계에 관한 법률자문(김병철변호사)
9. 29 (회의)	○ 보완 진술 청취
10. 6 (회의)	○ 관련의원징계의결(4명) 및 의회직 사퇴권고(1명)
10. 21	○ 의회직 사퇴서 제출(1명)
10. 23 (회의)	○ 본회의 보고문안 검토 ○ 의장선거관련 보완조사

Ⅲ. 징계양정 및 징계사유

1. 징계양정 : 주문(主文)과 같음

2. 징계사유

가. 구본선, 이완영 의원 : 2000. 7. 6일 실시된 제6대 충청북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금품수수사건과 연루된의원으로서 도의원 신분상의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하였고 도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킴은 물론 도민 모두에게 공신력을 잃게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나. 이길하 의원 : 2000. 7. 6일 실시된 제6대 충청북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금품수수사건과 연루된 의원으로서 불기소 되었으나, 수수금품을 본인 스스로 직접 되돌려 주지 않고 동료의원에게 의뢰하여 일시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도덕적인 측면에 비추어 도의원 신분상으로 공신력과 위상을 실추시킴.

다. 최영락의원 : 2000. 7. 6일 실시된 제6대 충청북도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수수한 금품을 반환조치는 하였으나, 이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 교환한 점등이 이해하기 곤란하며 동료의원 및 사회일각의 오해를 받을 만큼 실책이 있었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80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